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가단509854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 고 1. A

2. B

3. C

변론 종결 2015. 5. 20.

판결 선고 2015. 6. 3.

주 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98,615원 및 그 중 29,335,305원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4. 5. 21.까지는 연 15%의, 2014. 5. 2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6. 5. 접수 제33584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3.6. 7. 접수 제3019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29,335,305원과 채권보전비용 563,310원(원고와 피고들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들이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에 든 비용을 원고에게 변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비용은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가압류 내지 가처분결정을 받는데 소요된 것이다)의 합계 29,898,615원 및 그 중 29,335,30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2.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4. 5. 21.까지는 약정지연이 올인 연 15%의, 그 다음날인 2014. 5. 22.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6. 5. 및 같은 달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계약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9호증, 갑10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12, 갑13호증의 1 내지 8,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서울 은평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 전국은행연합회장, 반월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대구축산농협 북대구지점장, 주식회사한국외환은행 주업역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합계 342,500,000원(=80,000,000원 + 262,500,000원)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시가 합계 666,000,000원인 별지 목록 ②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무 36,000,000원,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217,998,602원, 반월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350,000,000원, 별지 목록 ② 기재 각 부동산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273,000,000원(= 5,000,000원 + 50,000,000원 + 30,000,000원 + 20,000,000원 + 3,000,000원 + 80,000,000원 + 40,000,000원 + 45,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소극재산으로 위 채무들 외에 D, E 및 피고 C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 C에 대한 채무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채무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B의 채무가 아니라 피고 A의 채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D 및 E에 대한 채무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는 물적 담보가 없으나,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권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갑12호증의 1 내지 3, 5,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채무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B의 채무가 아니라 피고 A의 채무이고, D 및 E의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각 계약 이후인 2013. 6. 25. 내지 2013. 7. 22.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피고 B의 자력을 평가함에 있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 B가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각 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

청 구 원 인

1. 신용보증

원고는 2011. 4. 20.경 피고 A의 부탁으로,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A과의 사이에, 피고 A이 소외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함)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을 금 42,5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4. 20.로 정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2011. 4. 20.경 소외 은행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금 42,5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4. 20.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 주채무의 내용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은 피고 A과의 사이에 체결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금 50,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5. 4. 20.로 정하여 피고 A에 대출하였습니다.

3.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대위변제금

피고 A은 2013. 5. 21.경 원금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 바,

2014. 2. 12.현재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29,335,305원을 연체하여, 같은날 원고가 소외 은행에 위 금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나. 채권보전비용

신용보증약정 당시 구상채무자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약정서 제10조 소정의 원고의 보증채무금 지급 및 기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위 보증과 관련한 구상채권보전을 위한 채권보전 비용으로 금 741,730원(= 328,540원 + 233,290원 + 179,900원)을 지출하였는데, 금 178,420원을 회수하여 그 일부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그 잔액은 금 563,310원(= 741,730 - 178,420)입니다.

다. 지연손해금

신용보증약정 당시 구상채무자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약정서 제10조 소정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비율은 그 이행일부터 연 15%입니다.

별지

- | | | |
|----|------------|---|
| 1. | 1동의건물의표시 |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아파트 |
| |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 건물의번호 : 제6층 제601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6층 제601호 42.21㎡ |
| | 대지권의표시 | 토지의표시 : 서울 강서구 F 대 704㎡
대지권의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704분의 21.68 |
| 2. | 1동의건물의표시 | 서울 은평구 H, I에 있는
J아파트 제101동 |
| |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 건물의번호 : 제14층 제1407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14층 제1407호 84.42㎡ |
| | 대지권의표시 | 토지의표시 : 1. 서울 은평구 H 대 8502.9㎡
2. 서울 은평구 I 대 19.5㎡
대지권의종류 : 1, 2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8522.4분의 49.718 |

별지목록2

부동산의 표시

2014카단1138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101호

철근콘크리트조 14.73㎡

대지권의 목적임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200.6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면적율 : 1. 200.6분의 11.9

2.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102호

철근콘크리트조 14.445㎡

대지권의 목적임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200.6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면적율 : 1. 200.6분의 11.67

3.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전유부분의 건물에 표시

1층 103호

철근콘크리트조 14.14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200.6

대지권종류 : 1. 소유권

대지권면적 : 1. 200.6㎡의 11.43

4.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전유부분의 건물에 표시

2층 201호

철근콘크리트조 23.95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200.6

대지권종류 : 1. 소유권

대지권면적 : 1. 200.6㎡의 19.36

5.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전유부분의 건물에 표시

2층 202호

철근콘크리트조 14.7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200.6

대지권외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외비율 : 1. 200.6분의 11.9

6. 1동의 건물외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전유부분의 건물외 표시

2층 203호

철근콘크리트조 13.34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200.6

대지권외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외비율 : 1. 200.6분의 12.4

7. 1동의 건물외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전유부분의 건물외 표시

2층 204호

철근콘크리트조 14.14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200.6

대지권외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외비율 : 1. 200.6분의 11.43

8. 1동의 건물외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전유부분의 건물비 표시

3층 301호

철근콘크리트조 23.857㎡

대지권의 목적임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200.6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00.6분의 10.36

9. 1층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전유부분의 건물비 표시

3층 302호

철근콘크리트조 14.73㎡

대지권의 목적임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200.6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00.6분의 11.9

10. 1층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전유부분의 건물비 표시

3층 303호

철근콘크리트조 15.34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200.6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00.6분의 12.4

1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전유부분의 건물면적 표시

3층 304호

월건판크리타르 14.14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200.6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00.6분의 11.43

12.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전유부분의 건물면적 표시

4층 401호

월건판크리타르 68.60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200.6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00.6분의 55.42

